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4차 교육위원회)
2024. 11. 26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진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4년 11월 14일
-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,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특수학교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제안 이유 검토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¹⁾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, 노후한 시내버스 등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규정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
-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버스 내 계단이 없고, 필요시 버스 내부와 보도를 이어주는 경사판이 작동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승객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,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어,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%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임
- 그러나 관련법은 노선버스에 한하여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교통약자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매일 등하교 시 이용하는 충청북도 내 11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50대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임

1) 제3조(이동권)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 ① ~ ② <생략>

③ 시장·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,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,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.

〈충청북도 내 특수학교별 통학버스 운영 현황〉

(2024. 9. 기준)

구분	전체 통학버스 수				규모			전체 학생 수	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	
	기본	리프트 차량	임차	계	45인승	30인승 이상	25인승 이상			
공립	청주혜원학교	4		2	6	6			287	178
	청주혜화학교		3		3	3			91	32
	이은학교	4	1	1	6	6			199	130
	충주혜성학교	3		2	5	3	1	1	114	105
사립	청주맹학교	1		3	4			4	67	28
	청주성신학교	4		2	6	6			233	155
	충주성심학교	2		3	5	1		4	69	12
	충주성모학교	2		1	3	1		2	56	28
	송덕학교		2		2		2		121	48
	청암학교	1	1	2	4	2	1	1	103	77
	꽃동네학교	2	1	3	6	5	1		156	124
합계	23	8	19	50	33	5	12	1,496	917	

- 이에, 도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하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이동권,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
 - 본 조례는 도내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저상버스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
 - “특수학교” 및 “저상버스”의 정의는 관련 법 및 고시를 따르고 있으며, “통학차량”의 정의는 「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에서

‘학교 학생의 등·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, 통학택시를 말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지만, 본 조례의 지원 대상인 통학차량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등·하교에 이용되는 통학버스로 한정되므로 조례에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

- 안 제3조는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,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과 관련된 교육감의 책무 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- 도내 11개 특수학교의 50대 통학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현황 및 보유 차량별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,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, 매년 지원계획 수립·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
 - 한편, 충청북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충청북도 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
 - 이에 유사한 지원계획을 매년 중복 수립·시행하는 것보다는 학생 통학 지원계획 수립·시행 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○ 안 제5조는 저상버스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본 조례의 목적인 특수학교 통학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,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
- 또한,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탑승 가능한 인원이 적어*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버스 증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, 도로 및 학교 진입로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함

*일반버스 승차정원 45명가량, 저상버스 승차정원 24~25명 가량

- 따라서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를 무조건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,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에 재량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재량권을 부여받은 교육감은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시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

○ 안 제6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도로면의 상태 등에 따라 운행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고 경사로와 보도 연결 시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등 도로와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
- 이러한 경우 해당 도로나 시설의 소관인 충청북도 및 시·군,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규정은 적절하다고 보임

다. 종합 검토 의견

-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은 저상버스 도입을 노선버스에 한정하고 있고, 장애학생들이 매일 등·하교 시 이용하는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저상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, 장애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·하교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의 저상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는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
- 또한, 법제처의 「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비추어 볼 때,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
- 본 조례는 특수학교의 저상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, 향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·하교를 함으로써 이동권뿐만 아니라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